

고 발 장

고 발 인

유우성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김자연
서울 강남구 도산대로 13길 5, CJ가로수타운 6층
전화 02-6925-2222, 팩스 02-6925-2299

피고발인

1. 김성중
2. 김보현
3. 권세영
4. 이재운
5. 최●●
6. 이●●
7. 서천호
8. 남재준

고 발 취 지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위반, 허위 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인도피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발 이 유

1. 고발인 및 피고발인의 지위



고발인은 2004.경 탈북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재북화교로서, 서울시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이던 2013. 2.경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기소되었으나 무죄가 확정되었고,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수사관들이 무고한 고발인에게 혐의를 씌우기 위해 증거를 조작한 사실이 확인된 국가범죄피해자입니다.

피고발인들은 국정원 직원들로서, 대부분 국정원에서 고발인에 대한 사건을 담당했던 수사 3처 소속으로 피고발인 김성중은 사건담당관(5급), 피고발인 김보현은 행정업무총괄(4급), 피고발인 권세영은 당시 조사실 책임자(4급), 피고발인 이재운은 당시 종합반 책임자(4급)였던 자이고, 당시 단장이었던 피고발인 최●●(2급)와 국장이었던 피고발인 이●●(1급)은 직속상관들로 검찰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작출하도록 지휘하였던 자들이며, 국정원 2차장이었던 피고발인 서천호 역시 위와 같은 범행에 관여한 자입니다.

2. 본 건 고발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발인들 가운데 일부는 증거조작범행으로 형사재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데,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적인 증거조작사실이 확인되었던 1심과는 달리 항소심재판에서는 나머지 ‘국정원직원들은 잘 알 수 없었고, 대부분 김보현의 단독적인 범행’ 이었다는 취지로 판결내용이 변경되면서 그 근거로 ‘국정원의 사실확인서’가 증거로 채택되는 등, 국정원이 증거조작사건의 은폐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국정원 내부고발자의 제보로 인해 2014. 3. 검찰의 국정원 압수수색당시 압수수색을 방해하기 위해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만들었다



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제보에 따르면, 2014. 3. 검찰에서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 대한 증거수집을 위해 대공수사국 해당팀(수사3처)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을 때에도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허위 서류등을 제출하였다고 합니다.

2013년 댓글수사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서 심리전단이 위장사무실을 만들어서 허위서류를 제출했던 것과 동일한 방법이었습니다.

‘유우성담당팀’ (처장 3급 이재운)은 기획→상부 결재→시설설치→검찰 압수수색팀안내→자축연의 순서로 사건을 진행했고, 당시 유우성담당팀은 5급 김00(현재 4급), 4급 김보현(당시 행정업무총괄), 4급 권세영(유우성 수사 때 조사실 책임자), 3급 이재운(유우성 수사때 4급 종합반 책임자였다가 수사 끝나고 3급 승진), 그리고 직속간부(단장 2급 최●●, 국장 1급 이●●)가 수사 현안회의를 열어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하였다고 합니다.

결국, 국정원은 무고한 시민을 간첩으로 만들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였고, 그 사실이 발각되자 이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기 위해 다시 한 번 조직적으로 수사기관과 법원을 기망하는 범죄를 저질렀던 것입니다.

A4용지 다섯 장으로 구성된 제보의 내용은 당시 수사에 관여했었던 국정원직원들의 성명과 직급, 그리고 현재 근무지까지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여지껏 언론을 통해 실명이 공개된바 없는 피고발인 김성중의 직급과 업무내용과 성격, 권세영을 비롯한 직원들의 성격과 전보내용과 경위 등에 대해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어서 그 신빙성이 상당히 높다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미 지난 2013년 국정원 댓글수사 당시 위장사무실과 허위서류를 통해 검찰의 수사를 무위로 돌리는데 성공했었던 국정원이 2014년 서울시공무원 간첩조작사건에서 국정원의 증거조작사실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자 다시 한 번 위장사무실을 통해 수사를 방해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었을 지도 모릅니다.

아직까지도 국정원은 이 사건에 대해 ‘일부 수사관들의 무리한 수사가 있었을지는 몰라도 고의적인 조작이나 증거은폐는 없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바, 안하무인으로 증거를 조작하고 위장사무실을 만들어 수사기관을 기망하는 국정원의 막무가내식 범죄를 뿌리뽑기 위해서라도 엄중한 수사 와 처벌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3. 피고발인들의 범죄행위

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피고발인들은 위장사무실과 허위공문서 등을 작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에 관한 공무를 방해하였으므로 이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나. 국정원법위반

국정원법은 직원들에 대한 정치개입(제9조)과 직권남용(제11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고발인들은 증거조작사건이 국정원과 정권에 부담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검찰의 수색을 방해하였는바, 이는 국정원법위반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다.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피고발인들은 위장사무실을 실제인 것처럼 보이고, 자신들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허위로 공문서를 작성, 이를 수사기관이 압수하게 하였는바 이는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라. 범인은닉죄

피고발인들은 허위공문서작성 등을 통해 증거위조행위에 가담한 최현도, 이태희 등의 직속간부들의 범행을 은닉하고 이들이 수사기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였는바, 이는 범인은닉 내지 도피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마. 증거인멸교사죄

피고발인들은 자기 또는 공범의 증거조작범행에 관한 증거인멸을 교사하였는바, 이는 증거인멸교사죄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4.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고발인은 피고발인들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위반,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범인은닉죄, 증거인멸교사죄 등으로 고발하오니 철저히 수사하여 엄히 처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거 방법

1. 증 제1호증 내부고발자의 제보

첨부 서류

1. 위 증거방법 1부

1. 위임장

2017. 12. .

고발인의 고발대리인

법무법인 상록

담당변호사 천낙봉

담당변호사 장경욱

법무법인 율

담당변호사 양승봉

법무법인 양재

담당변호사 김진형



담당변호사 김자연



법무법인 향재

담당변호사 김유정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 귀중



법무법인향재
Law Firm Yangjae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13길 5, 6층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37-5, 6층)
Tel 02 6925 2222 | Fax 02 6925 2299 | Website www.lawyj.com